

## □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운영에 관한 령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b>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운영에 관한 령</b>	<b>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운영에 관한 령</b>
<b>제1조(목적)</b> 이 영은 총무원법 제16조에 의 해 불교문화유산의 발굴조사 및 보존·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'재단법인 불교 문화재연구소'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이 영은 총무원법 제16조에 의 해 불교문화유산의 발굴조사 및 보존·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'재단법인 불교 문화유산연구소'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b>제2조(명칭)</b> 명칭은 "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 구소"(이하 "연구소")라 한다.	<b>제2조(명칭)</b> 명칭은 "재단법인 불교문화유산 연구소"(이하 "연구소")라 한다.
<b>제4조(사업)</b>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1. 문화재 보존, 보호 활동 2.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3. 문화재 연구 및 조사 4. 문화재 자료집 발간 5. 문화재 연구인력 양성 교육 및 사회교육 6. (생략) 7. 기타 문화재의 보존, 연구에 필요한 사항	<b>제4조(사업)</b>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1. 국가유산 -----. 2. 국가유산 -----. 3. 국가유산 -----. 4. 국가유산 -----. 5. 국가유산 -----. 6. (현행과 같음) 7. 기타 국가유산의 보존, -----.
<b>제6조(임원)</b> 제①항 (생략) 1. (생략) 2. 상임이사 1인 3. (생략) (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 4. (생략)	<b>제6조(임원)</b> 제①항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대표이사 (연구소장 겸임) 1인 3. (현행과 같음) (이사장, 대표이사를 포함한다.) 4. (현행과 같음)
<b>제7조(임원의 선임)</b> 제①항 (생략) 1. (생략) 2. 상임이사는 문화재전문가 중에서 이사장 이 임명한다. 3. (생략) 4. 이외의 이사는 문화재전문가 중에서 이사 회에서 선임한다.	<b>제7조(임원의 선임)</b> 제①항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대표이사는 국가유산전문가 중에서 이사 장이 임명한다. 3. (현행과 같음) 4. 이외의 이사는 국가유산전문가 중에서 이 사회에서 선임한다.

현행	개정안
<p><b>제9조(직무대행)</b>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<b>상임이사</b>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b>제9조(직무대행)</b>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<b>대표이사</b>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<p><b>제16조(임원 및 자격)</b>  제①항 (생략)  1~3.(생략)  ② 소장은 법인의 <b>상임이사</b>가 겸직한다. 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중앙중무기관 국장급, 중앙중무기관 또는 <b>불교문화재연구소</b>의 1급 이상 일반직 중무원, <b>문화재관련학</b> 전공자로서 대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  &lt;개정 불기2562(2018).01.25&gt;  제④항 (생략)</p>	<p><b>제16조(임원 및 자격)</b>  제①항 (현행과 같음)  1~3.(현행과 같음)  ② 소장은 법인의 <b>대표이사</b>가 겸직한다.  ③ -----  ----- <b>불교문화유산연구소</b>의 1급 이상 일반직 중무원, <b>국가유산관련학</b> -----.  제④항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7조(직원)</b>  제①항 (생략)  ② 연구원은 <b>문화재</b> 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, 관련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  제③항 (생략)</p>	<p><b>제17조(직원)</b>  제①항 (현행과 같음)  ② 연구원은 <b>국가유산관련학과</b>에서 -----  -----.  제③항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8조(임직원의 직무)</b>  제①항, 제②항, 제③항 (생략)  ④ 연구원은 연구소의 문화재조사, 연구업무를 수행한다.  제⑤항 (생략)</p>	<p><b>제18조(임직원의 직무)</b>  제①항, 제②항, 제③항 (현행과 같음)  ④ 연구원은 연구소의 <b>국가유산조사</b>, -----.  제⑤항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 &lt;불기 2551(2007).07.10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 &lt;불기 2551(2007).07.10&gt;</b></p>
<p><b>제3조(불교문화재연구소 정관과의 관계)</b> 이 영과 연구소의 정관이 상충할 때는 이 영이 우선한다.</p>	<p><b>제3조(불교문화유산연구소 정관과의 관계)</b> -----  -----.</p>